

중국 발효주 및 이외 혼합주 제품 국가 표준 (GB 2758-2012)

중국 발효주 및 이외 혼합주 제품 통관거부사례

- 지난 1-9월 통관거부사례 통계 분석결과 한국산 발효주와 이외 혼합주 제품의 주요 거부 사유로는 식품첨가제 아스파탐 기준치 초과로 확인됨
- 통관거부된 3개 제품은 산둥성 검역소에서 적발되었음

[통관거부현황 - 2016년 1-9월 발효주와 이외 혼합주 제품 불합격 사례]

식품	원산지	거부년월	HS_CODE	중량(kg)	항구	처리	거부사유
주류	한국	2016.08	2206009000	270	산둥	소각	식품첨가제 아스파탐 기준치 초과
주류	한국	2016.08	2206009000	900	산둥	소각	식품첨가제 아스파탐 기준치 초과
주류	한국	2016.08	2206009000	360	산둥	소각	식품첨가제 아스파탐 기준치 초과

※ 본 통계는 중국 내 한국산 식품첨가물 불합격 통관거부사례 일부를 발췌한 것임

중국 발효주 및 이외 혼합주 제품 국가 표준 (GB 2758-2012)

가. 발효주와 이외 혼합주

1. 범위

- 본 표준은 발효주와 이외 혼합주에 적용됨

2. 용어 및 정의

2.1 발효주

- 양곡, 과일, 유류 등을 주요 원료로 하여 발효 또는 부분 발효로 양조되어 만들어진 음료주

2.2 발효주와 혼합주

- 발효주를 술의 기반으로 하여 식용 가능한 부재료나 식품첨가물을 넣고 배합, 혼합 또는 가공하여 만들어져 원래 기본 주의 맛이 달라진 음료주

3. 기술 요구사항

3.1 원료 요구사항

- 원료는 해당하는 식품 표준과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함

3.2 관능 요구사항

- 제품 표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함

3.3 물리화학적지표

- 물리화학적지표는 <표1> 규정에 부합해야함

<표1> 물리화학적지표

항 목	지 표	검증방법
	맥주	
포름알데히드/(g/L) ≤	2.0	GB/T 5009.49

중국 발효주 및 이외 혼합주 제품 국가 표준 (GB 2758-2012)

가. 발효주와 이외 혼합주

3.4 오염물, 진균독소 제한량

3.4.1 오염물 제한량은 GB 2762 규정에 부합해야함

3.4.2 진균독소 제한량은 GB 2761 규정에 부합해야함

3.5 미생물 제한량

3.5.1 병균 제한량은 GB 29921 중 익힌 곡류제품(구운 제품 포함)의 규정에 부합해야함

3.5.2 미생물 제한량은 <표2>의 규정에도 부합해야함

<표2> 미생물 제한량

항 목	표본추출방안과 제한량 ^a			검증방법
	n	c	m	
살모넬라균	5	0	0/25mL	GB/T 4789.25
황색포도상구균	5	0	0/25mL	

^a 샘플의 분석과 처리는 GB 4789.1에 따라 시행함

중국 발효주 및 이외 혼합주 제품 국가 표준 (GB 2758-2012)

가. 발효주와 이외 혼합주

3.6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GB 2760 규정에 부합해야함

3.6.1 진균독소 제한량은 GB 2761 규정에 부합해야함

4 표시

4.1 발효주와 이의 혼합주의 표시에는 알코올 도수, 오리지널 맥아즙 농도, 오리지널 과즙 함량, 경고문구와 유통기한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 외에 GB 7718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4.2 ‘%vol’를 단위로 알코올 도수를 표기해야 함

4.3 맥주는 반드시 오리지널 맥아즙 농도를 표기해야 하고 ‘오리지널 맥아즙 농도’를 제목으로 하고 플라토 부호 ‘°P’를 단위로 사용함 과실주(포도주 제외)에는 오리지널 과즙 함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배합 원료표에 ‘xx%’로 표기해야 함

4.4 ‘과음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반드시 하고 기타 경고 문구를 동시에 표기할 수 있음 유리병 포장 맥주에는 ‘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등과 같은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4.5 포도주와 기타 알코올 도수가 10%vol이상인 발효주와 이의 혼합주에는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됨

항목	최대 사용량/(g/kg)	비고
아스파탐 (액체 복합조미료)	1.2	주류의 아스파탐 사용은 금지됨